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10. 12. 24. 규정 제 71호
 전부개정 2012. 2. 21. 규정 제123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171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3.16.] [규정 제215호, 2015.3.16., 일부개정]
 [시행 2016.10.5.] [규정 제257호, 2016.10.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5.3.16., 2016.10.5.>

1. “멘토”란 결연관계를 맺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모델 제공자를 말한다.
2. “멘티”란 결연관계를 맺은 멘토로부터 자기 계발 및 꿈의 실현과 관련된 도움과 조언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멘토링”이란 경험, 지식 및 기술 등이 풍부한 멘토가 결연관계를 맺은 멘티를 전담하여 지도 및 조언함으로써 역량과 잠재력을 키우고 개발하는 인재 육성 과정을 말한다.
4. “코멘트(KorMent)”란 한국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Korea Leader Mentoring Network)의 약자로서,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과 대학생 재능멘토링 등을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이란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멘토(이하 “나눔지기”라 한다)가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 멘티(이하 “배움지기”라 한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는 재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을 말한다.
- 5의2. “대학생 재능멘토링”이란 대학생으로 구성된 멘토(이하 “대학생 나눔지기”라 한다)가 초·중·고교생 멘티(이하 “청소년 배움지기”라 한다)에게 교육기부, 기초학력증가, 진로 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통합하여 말한다.
- 5의3. “대학생 재능봉사캠프”란 방학 중 대학생 나눔지기가 청소년 배움지기 소속 기관에서 정한 기간동안 운영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말하며,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캠프와

대학을 통해 운영하는 캠프로 구분된다.

- 5의4.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이란 대학생 나눔지기가 저소득층 청소년 배움지기의 기초학력 증가 및 진로 지도를 하는 멘토링을 말한다.
- 5의5. "다문화학생 멘토링"이란 대학생 나눔지기가 다문화 청소년 배움지기의 기초학력 증가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을 말한다.
6. "멘토링팀"이란 한 명의 나눔지기와 10명 내외의 배움지기로 구성된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운영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7. "분과"란 리더십, 자기계발, 경영전략 등의 유사한 주제들을 기준으로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의 멘토링팀을 분류한 상위 운영 단위를 말한다.
8. "분과위원회"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 조직을 말한다.
9. 삭제 <2016.10.5.>
10. 삭제 <2013.12.31.>
11. 삭제 <2013.12.31.>
12. "참여대학"이란 대학생 재능멘토링에 참여한 대학교를 말한다.
13. "수혜기관"이란 대학생 재능멘토링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배움지기가 소속되거나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12.31.>

제4조(사무국) 코멘트 사업기획 및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코멘트 사무국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멘토링 프로그램 업무 담당 부서에 둔다. <개정 2013.12.9.,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2장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제1절 정책자문단과 멘토링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정책자문단 및 멘토링운영위원회의 설치) 재단에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정책 및 방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정책자문단과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멘토링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1., 2015.3.16.>
[제목개정 2010.10.31., 2015.3.16.]

제6조(정책자문단의 구성) ① 정책자문단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② 정책자문단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1. 인재 육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
2. 재단 인재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
3.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관과 합리적 성품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신설 2012.10.31., 2013.12.31., 2016.1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7조(정책자문단의 기능) ① 정책자문단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정책과 방향 및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개정 2015.3.16.>

② 정책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멘토링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멘토링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멘토링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멘토링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② 멘토링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1. 인재 육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
2. 재단 인재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
3.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관과 합리적 성품

③ 멘토링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31., 2013.12.31.>

제9조(멘토링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멘토링운영위원회는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1.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계획

2.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 선발 기준

3. 삭제 <2015.3.16.>

4.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활동비 지급 기준

5. 나눔지기 심사 및 후보자 집단 구성

6. 참여자에 대한 포상 계획

7. 기타 멘토링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멘토링운영위원회는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6.>

1.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 결과

2. 기타 멘토링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사무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멘토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멘토링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5.3.1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정책자문단 및 멘토링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의결 할 수 없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서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서 이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1.]

제2절 나눔지기 위촉 및 배움지기 선발

제11조(나눔지기 위촉) ① 나눔지기 후보자는 외부기관·단체, 재계, 학계, 재단 임직원, 기존 나눔지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② 멘토링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나눔지기 후보자 집단을 구성하고, 이사장은 나눔지기 후보자 집단에서 해당 연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나눔지기를 최종 선발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제목개정 2015.3.16.]

제12조(배움지기 선발) ① 배움지기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주일 이상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배움지기로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제2호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배움지기 후보자 집단을 구성하고, 나눔지기는 배움지기 후보자 집단에서 해당 연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배움지기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5.3.16.>

③ 나눔지기가 심사할 때 서류심사 외에 면접심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심사관으로는 나눔지기 외에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참여 경험이 있는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 정책자문단 위원, 멘토링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④ 삭제 <2015.3.16.>

[제목개정 2015.3.16.]

제3절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10.5.>

제13조(멘토링 운영) ① 나눔지기는 멘토링 주제와 활동계획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16.>

② 나눔지기는 활동계획에 따라 멘토링 개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활동기간 중 배움지기와의 대면모임은 월 1회 이상을 권장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③ 나눔지기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부나눔지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16.>

제14조(활동비 등 지급) ① 재단은 멘토링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에 기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② 기본 활동비는 활동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나눔지기가 연구 프로젝트 진행, 현장 답사, 보고서 발간 등 비용이 발생하는 특별활동을 진행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④ 재단은 멘토링팀별 연락, 분과 모임 등 배움지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배움지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⑤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멘토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제15조(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 ① 사무국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지기 분과위원회와 배움지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16.>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운영 결과를 멘토링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절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 포상 등

제16조(포상 및 혜택) ① 재단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활동 나눔지기, 배움지기 및 멘토링팀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멘토링 활동이 종료한 후 개인 및 단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2016.10.5.>

② 재단은 개인 및 단체 포상을 받은 배움지기에 대해서는 재단의 인재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3.16.>

제17조(나눔지기에 대한 참여 제한) ① 재단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눔지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멘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3.12.31., 2015.3.16.>

1. 멘토링 활동을 태만히 하거나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코멘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재단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에 참여한 나눔지기가 연간 6회 미만으로 모임을 진행한 경우 추후 코멘트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멘토링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2015.3.16.>

[제목개정 2015.3.16.]

제18조(배움지기에 대한 참여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움지기의 코멘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1. 배움지기가 예의범절 등 배움지기로서 지켜야할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멘토링팀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경우
2. 배움지기가 멘토링 모임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다만, 나눔지기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나눔지기가 배움지기의 참가 제한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배움지기에 대해서는 재단의 인재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제목개정 2015.3.16.]

제19조 삭제 <2016.10.5.>

제3장 대학생 지식멘토링 <개정 2016.10.5.>

제1절 참여대학 및 수혜기관 <개정 2016.10.5.>

제20조(참여대학 선발 및 역할) ① 재단은 대학으로부터 대학생 재능멘토링 참가 신청을 받고, 사업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을 선발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2016.10.5.>

1. 삭제 <2016.10.5.>
2. 삭제 <2016.10.5.>
3. 삭제 <2016.10.5.>
4. 삭제 <2016.10.5.>

② 재단은 참여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신설 2016.10.5.>

1. 소속 대학생의 대학생 나눔지기로서의 참여
2. 대학생 재능멘토링 활동현황 관리
3. 대학생 나눔지기에게 사업비 지급 및 정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

[제목개정 2016.10.5.]

제21조(수혜학교 선발 및 역할) ① 재단은 교육청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계획에서 정한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수혜기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2016.10.5.>

1. 삭제 <2016.10.5.>
2. 삭제 <2016.10.5.>
3. 삭제 <2016.10.5.>
4. 삭제 <2016.10.5.>

② 재단은 수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신설 2016.10.5.>

1. 청소년 배움지기 선발
2. 멘토링 활동 공간 제공
3. 대학생 나눔지기의 멘토링 활동 확인
4. 멘토링 활동 진행 점검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

[제목개정 2016.10.5.]

제2절 대학생 나눔지기 및 청소년 배움지기 선발

제22조(대학생 나눔지기 선발 및 사전교육) ① 재단은 참여대학이 참여대학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하는 등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생 나눔지기를 선발하도록 한다. <개정 2015.3.16., 2016.10.5.>

② 삭제 <2016.10.5.>

③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에 참가하는 대학생 나눔지기는 재단에서 직접 선발한다. <신설 2016.10.5.>

④ 대학생 나눔지기는 대학생 재능멘토링 참여를 위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6.10.5.>

[제목개정 2015.3.16., 2016.10.5.]

제23조(청소년 배움지기 선발) 청소년 배움지기는 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혜기관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5.3.16., 2016.10.5.>

[제목개정 2015.3.16.]

제3절 대학생 재능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10.5.>

제24조(멘토링 운영) ① 대학생 나눔지기는 수혜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활동계획과 멘토링 주제를 담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재단 또는 수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3.16., 2016.10.5.>

②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에 참여하는 대학생 나눔지기는 제출한 캠프계획서에 따라 멘토링을 실시하되, 필수 멘토링 시간인 30시간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6., 2016.10.5.>

③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및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나눔지기는 재단이 정한 연간 멘토링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신설 2016.10.5.>

제25조(활동비 지급) ① 재단은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에 참여하는 대학생 나눔지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2016.10.5.>

②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및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나눔지기는 온라인 출근부 기준으로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신설 2016.10.5.>

③ 제2항의 근로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참여대학은 온라인 출근부 관리 및 근로장학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재단은 참여대학의 근로장학금 관리 업무를 모니터링 한다. <신설 2016.10.5.>

제25조의2(활동 모니터링) 재단은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대학의 대학생 재능멘토링 운영 현황 및 멘토링 활동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5.]

제25조의3(전문가 협의체 운영) 재단은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5.]

제4절 인증서 발급 및 포상 등

제26조(인증서 발급) 재단은 대학생 재능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나눔지기에 대하여 이사장 명의의 봉사활동 인증서 또는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5.3.16., 2016.10.5.>

제27조(포상 및 혜택) ① 재단은 재능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활동 대학생 나눔지기, 청소년 배움지기, 참여대학 및 참여대학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능멘토링 활동이 종료한 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3.12.31., 2015.3.16., 2016.10.5.>

② 포상을 받은 대학생 나눔지기에 대해서는 재단의 인재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3.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및 혜택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0.5.>

제28조 삭제 <2016.10.5.>

제29조(참여제한) 불성실한 멘토링 활동 등으로 수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대학생 나
눔지기 및 멘토링 활동 이외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수혜기관에 대해서 재단은 대학생 재능멘토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5.]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재육성지원부”를 “나눔봉사부”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171호, 2013.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15호, 2015.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57호, 2016.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청 령 서 약 서

위원회 명 :

본인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령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자문 및 심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아울러 위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 및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사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 .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위원회 위원장 귀하